

# 제210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23. 10. 23.(서면심의)

## □ 안건명 : 8호선 차량기지(모란, 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용역발주심의)

위 안건에 대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채택」 의결함.

### 【주요 심의내용】

- 과업내용서에 건설기술심의, 설계경제성(VE) 검토, 건설신기술활용심의, 공법선정 등에 대한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여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의 경우 설계 성과품에 이를 작성하여 포함할 것

첨부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끝.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8호선 차량기지(모란, 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철 도	<p>1. 4쪽,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적용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 적용하여 성실하게 <u>과업을 수행</u> 하여야 하며 ~~</p> <p>2. 5쪽, 나.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다)와 라)의 내용 중 참여 건설기술인의 투입계획은 중복된 내용으로서 정리가 필요함</p> <p>3. 5쪽 나.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마) 기술제안서는 무슨 의미 인지?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말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p> <p>4. 5쪽 나.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부분과 다. 공정 보고에 관한 사항 내용 사이에 과업보고회 부분의 추가가 필요함(다. 공정 보고 부분은 서면 보고만을 의미한다고 판단됨) ⇒ 다. 과업보고회 1) 착수보고회 ~~ 2) 중간보고회 ~~ 3) 과업 완료보고회 등과 같이 추가가 필요함</p> <p>5. 6쪽, 2) 중간보고 내용 중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인에게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 분야별 책임기술인에게 설명토록 한다고 만 했지 누가 누구에게 설명하는지 주, 객체가 불명확함</p> <p>6. 6쪽, 라. 과업 착수와 동시에 ~~ ⇒ 라. 작업일지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 ~~ (소제목과 내용의 분리가 바람직함)</p>	

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철 도	<p>7. 6쪽, 3.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다. 관계기관과의 합의사항  ⇒ 다. 관계기관과의 <u>협</u>의사항</p> <p>8. 7쪽, 4. 과업 내용 변경조건  나.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적인 ~~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 나.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적인 ~~ 과업기간을 <u>연장</u> 또는  ~~</p> <p>9. 8쪽, 6.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4)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 요청 ~~  ⇒ 4)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 변경 등으로 <u>인한</u>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 요청 ~~</p> <p>10. 10쪽, 기술 자문 등  가. 발주처는 『건설기술 ~~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가. 발주처는 『건설기술 ~~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u>야 한다.</u>  나. 기술 자문은 발주처의 기술 ~~ 전체 용역과 업을 대상  ~~  ⇒ 나. 기술 자문은 발주처의 기술 ~~ 전체 <u>용역 과업</u>을  대상~~</p> <p>11. 10쪽, 9. 기술 자문 등  바. 회의 준비 및 실시에 관한 비용은 설계자가 지급한다.  ⇒ 자문비용은 통상 계약상대자가 지급하고 추후 실비정산  하든지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든지 2가지 방법이 있지만  객관적인 자문을 위해서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함.</p>	

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철 도	<p>12. 10쪽,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 계약상대자의 <u>보안관리</u> 과실이나~~</p> <p>13. 12쪽, 라. 발주기관은 과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라. 발주기관은 과업 내용의 <u>변경으로 설계금액의 변경</u>이 발생한 경우~~</p> <p>14. 14쪽, 더. 사업비 분담은 서울특별시, ~~  ⇒ 각 기관별 사업비의 분담은 발주처의 분담협의 비율로 정할 사항이지 계약상대자가 정할 사항이 아님(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결과 총사업비 산정이 되면 협의된 분담비율로 발주처가 결정할 사항임)</p> <p>15. 14쪽, 러. 발주처가 제시한 총사업비(공사비)를 ~~ 초과가 예상될 경우 발주처 및 ~~ 협의를 통해 사업비 내 설계방안을 강구한다.  ⇒ 러. 발주처가 제시한 총사업비(공사비)를 ~~ 초과가 <u>불가피할 경우</u> 발주처 및 ~~ <u>협의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u></p> <p>16. 70쪽, 3) 실시설계 성과품 제출목록은 다음과 같다.  ⇒ 표에서 성과품 기록물(file 또는 usb 등)은 물론 아래에 ※표로 부기하긴 하였지만 기본설계 성과품 목록과 같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p> <p>17. 85쪽, 6. 회의 등  가.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 여기서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의 효력을 가진다.  ⇒ 가.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 여기서 작성된 회의록은 <u>공문서의 효력</u>을 가진다(공문서이지 공문은 아님)</p>	

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철 도	<p>18. 85쪽, 나. 회의록은 &lt;서식 1&gt;에 의거 작성하되, ~~ 양식은 변경 가능하다 하며 참석자의 ~~ 회의록은 차기 회의 시 회의 전에 ~~ 확인받아야 한다  ⇒ 나. 회의록은 &lt;서식 1&gt;에 의거 작성하되, ~~ 양식은 변경 가능하지만 참석자의 ~~ 회의록은 차기 회의 전에 ~~ 확인받아야 한다</p> <p>19. 85쪽, 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인 ~~ 작업일지에 작성하고, 임무를 완료한 ~~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인 ~~ 작업일지에 작성하고, 업무를 완료한 ~~ 한다.</p>	
종합의견	<b>조건부채택</b>	

2023년 10월 일

심의위원 :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8호선 차량기지(모란, 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토목 시공	<p>1. 주공사인 건축분야를 1순위로 배열 (Page 2)                      (1) “3.과업의 개요” “다. 분야” 와 “라.과업의 범위”의 순서를 건축분야가 1순위로 배열 필요 (사유 : 건축분야가 주공사임)</p> <p>2. 신호분야 및 소방분야 추가 (P2)                      (1) “3.과업의 개요” “다. 분야” 와 “라.과업의 범위”에 신호분야 및 소방분야 추가 검토 필요</p> <p>3. 발주처 와 발주기관 용어를 발주처 또는 발주기관으로 통일                      (1) ~“발주처 와 발주기관” 혼용된 부분은 “발주처” 또는 “발주기관”으로 한가지 용어로 통일 필요                      -대부분 발주처로 사용되었으나, 일부분 발주기관으로 사용 됨.                      (발주기관 - “6.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4)발주기관으로부터~, “13.하도급 사항” 가.~아. “17.기술용역 성과품 공개이행” 가.1), “18.기타사항” 라. 등)</p> <p>4. 각 분야(건축,토목,궤도,전기,기계.설비,통신 등) 순서 조정 (P22)                      (1) “제3장” 3. 기본및실시설계, 가. 1)~ 각 분야(토목 ~ 등)를 각 분야(건축, 토목, 궤도~ 등)으로 변경 필요</p> <p>5.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공사로 표준품셈 적용 (P24)                      (1) “제3장” 3. 기본및실시설계, 가, “11)공사비산정 적용기준”의 다) 단가산정은 표준시장단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7조 제2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에 위배되니 “표준품셈 적용” 검토 필요</p>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p>6. 준공설계 추가 (P22, P27)</p> <p>(1) “제3장” 3. 기본및실시설계, 가.기본방침 “2) 계약상대자는 별내선(8호선 연장)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 기 운행중인 ~ 이하생략”에서 『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 및 준공설계도서』로 추가 삽입 검토 (P22)</p> <p>(2) “제3장” 3. 기본및실시설계, 나,토목분야, 【실시설계】 1)일반사항, “가)본 용역은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공사 기본설계와 ~ 이하 생략”에서 『기본설계 와 준공설계』로 수정 검토 필요 (P27) →사유 :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에 포함된 모란차량기지 7편성 작업시 기본설계도가 변경되어 준공되었음</p> <p>7. 계측관리 삭제 검토 (P32)</p> <p>(1) “제3장” 3. 기본및실시설계, 나,토목분야, 【실시설계】 5)설계업무, “라)계측관리”는 『8호선 차량기지(모란,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의 공사성격상 계측삭제 검토 필요 (단, 토목공사 시방서 등에 공사시 인접 선로에 대한 레벨측량으로 주기적 점검 시행하는 내용 명기 필요)</p> <p>8. 제3장 분야별 순서는 건축분야를 1순위로 조정 (P38)</p> <p>(1) “제3장”의 “나.토목분야, 다. 궤도분야, 라. 건축분야, ~ 등”의 순서를 “3.과업의 개요” “다(분야) 및 라(과업의 범위)”의 순으로 배치 필요 →나. 건축분야, 다, 토목분야, 라. 궤도분야 ~ 등의 순으로 조정</p> <p>9. 오타 수정 (P72)</p> <p>(1) “제3장” 4. 시설별세부지침, 가, “2)토목분야” 나) 배수시설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del>다</del>다.』 → 『설치하여야 한다』로 오타 수정. 끝.</p>	
종합의견	<p>(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p> <p>※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p>	

2023년 10월 12일

심의위원 :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8호선 차량기지(모란, 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p>12. <del>전담 조직 구성 및 용역 수행자 교체</del></p> <p>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조직 자체가 전담조직이므로 중복</p> <p>다. <del>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del></p> <p>-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은 모호하여 분쟁의 소지 있음</p> <p>3. 기본 및 실시설계</p> <p>가. 기본방침</p> <p>9) 기본설계에 포함되는 업무는 아래와 같다.</p> <p>마)~자) 항의 ‘시설물’ 을 ‘가동설비(전기, 신호, 통신, 기계)’ 로 수정                      저) 차량기지 토양오염 예방대책 검토·반영— 기존차량기지 불필요                      처) 차량기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검토·반영— 기존차량기지 불필요                      키) 그 외 설계 추진에 필요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는 사항 불공정 사항</p> <p>-가동설비(전기, 신호, 통신, 기계)와 건축분야가 혼재하여 컨소시엄이 필수적이므로 컨소시엄 구성 조건을 반영 필요함</p>	
종합의견	<p><b>( 조건부채택 )</b>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p> <p>※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p>	

2023년 10월 일

심의위원 :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8호선 차량기지(모란, 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b>건축 기계 설비</b>	<p>바. 기계·설비분야 (58페이지)</p> <p>바. 실시설계 시 환기 및 제연 성능과 특성에 대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검증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p> <p>=&gt; 삭제 요청 : 환기 및 제연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대형 규모의 건축물에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금번 발주되는 건축물 증설 및 리모델링 규모에 비해 과도한 내용으로 판단됨</p> <p>3) 설계조건</p> <p>(7) 공조기 계실 내 급기 및 배기덕트는 각각의 송풍기 별로 분리하여 환기구 풍도까지 연결한다.</p> <p>=&gt; 오타수정 : “공조기 기계실” 로 수정</p> <p>사) 소방분야</p> <p>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적합하도록 설계</p> <p>=&gt; 소방법규 변경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p>	
<b>종합의견</b>	<p><b>조건부채택</b></p> <p>※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p>	

2023년 10월 11 일

심의위원 :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8호선 차량기지(모란, 고덕) 부속시설 추가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공통	1. '제2장-9.(기술 자문 등)'와 관련하여 건진법 시행령 제19조의 '기술자문위원회' 관련 내용을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에 맞춰 수정할 것	10쪽
	2. '제2장-16.(신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공법선정과 설계 반영 적정성 검토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서로 상이하므로 아래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수정할 것 - 공법선정 : 공법선정위원회(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설계 반영 적정성 검토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14~15쪽
	3. '제3장-2.(행정절차 검토 ·추진)-마.'와 관련하여 설계의 경제성 검토는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지침(2023)」 등에 따라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 하는 경우 구분없이 1회 이상 실시하되 기본설계 단계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맞춰 수정할 것	21쪽
	4.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의 경우 설계 성과품에 이를 작성하여 포함할 것	-
	5. (참고사항) 친환경제품 사용 등에 대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반영할 것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사설계서에는 녹색 제품 사용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때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 ( <a href="http://gmc.greenproduct.go.kr">http://gmc.greenproduct.go.kr</a> ) 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에 적합한 건설자 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 종합공사 40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 이상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직접구매품목을 녹색제품 으로 직접구매할 수 있도록 공사내역서의 관급(지급)자재를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결과 녹색제품 설계 반영실적과 증빙자료를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용역업체 → 발주처 → 기후환경정책과)	-
건축	'라. 건축 분야'에 아래 내용 추가를 검토할 것 6.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시행에 관한 내용을 과업내 용서에 포함할 것 - 설계심의 대상인 경우 가설구조물 관련 구조검토서를 첨부하고 가설구조 물 부문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설계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를 명확하게 작성한다.	38쪽

	<p>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유지관리 부대시설 설계에 관한 내용 추가를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가 쉽도록 유지관리 부대시설(점검구, 점검용 사다리, 점검용 피트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li> </ul> <p>8. 기존 시설물 철거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과업내용에 포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규모 이상의 철거 대상 시설물이 있는 경우 철거계획 및 해체공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체공사 계획서는 건설안전기술사나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li> </ul>	
전기	<p>9. 전기분야 공통사항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p> <p>(1) 화재시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임을 감안하여 케이블 등 각종 자재는 저독난연성으로서 화재시 유독성 가스 발생이 가장 최소화되는 재질을 고려한다.</p> <p>(2) 전기분야 설계범위를 명시한다.</p> <p>예시) - 전차선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차선 지지물 설계,</li> <li>· 전차선 가선 설계 등</li> </ul> <p>- 시설전기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열 및 동력 설비</li> <li>· 조명설비 등</li> </ul>	47쪽
	<p>10. 전기분야 공통사항에 다음 내용을 수정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철도시설공단 → 국가철도공단</li> </ul>	48쪽
기계	<p>11. (과업내용서 “차량기지 공조·환기설비 설계조건”)에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모두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하여 변형, 공기저항 및 누설이 적도록 설계한다.</li> </ul>	59쪽
	<p>12. (과업내용서 “소방분야 설계조건”)에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연설비 설계 시 과압 발생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li> </ul>	61쪽
종합의견	<b>조건부채택</b>	

2023년 10월 일

심의위원 :